

# 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도시관리계획(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 560-476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5. 5. 4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

1. 계획취지 : 도시관리계획(검암1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2. 위 치 : 서구 검암동 648-1, -3번지
3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  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: 변경 없음
  - 나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 없음
  - 다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   - 근린생활시설용지(B용도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조서

연번	기 정					변 경 (안)				
	가구번호	가구면적(m <sup>2</sup> )	획지		분할가능 획지수	가구번호	가구면적(m <sup>2</sup> )	획지		분할가능 획지수
		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			위치	면적(m <sup>2</sup> )	
1	82	3,711.4	1	531.6	-	82	3,711.4	1	685.7	-
			2	521.8	-			2	521.8	-
			4	502.8	-			4	502.8	-
			5	159.9	-			5	159.9	-
			6	207.0	-			6	207.0	-
			7	235.3	-			7	235.3	-
			8	384.1	2			8	384.1	2
			9	221.5	-			9	221.5	-
			10	216.2	-			10	216.2	-
			11	450.0	-			11	450.0	-
			13	154.1	-					
			15	127.1	-			15	127.1	-

- 근린생활시설용지(B용도)의 가구 및 획지 결정(변경) 사유서

가구번호	위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82	1, 13 → 1	획지합병	건축면적 확장

- 라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- 마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4. 고시도면 : 별첨(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: 구보계재 생략)